# 7. 감 사 의 견 서

농협법 제71조 제1항 및 조합 정관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
서기 2020년 1월 30일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기 2019년(제59기)
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,
자본변동표의 각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
정확함을 인정함.

**2020년 01월 30일**

**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**

**감사 문 영 희** 

**감사 양 동 석** 